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
----------	-----

2022. 3. 15.(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5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청원경찰은 근무 장소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처우개선에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가. 제정 목적

- 청원경찰은 고용계약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업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이중적 지위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자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무상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과 동일하나, 신분은 민간인으로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자로 대우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서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본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원경찰의 복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임.

## 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직무범위
제2조	정의	제7조	교육훈련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휴가
제4조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9조	보수 및 수당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10조	포상

### ○ 안 제2조(정의)

- 기존 법에 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 범위를 충청북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로 구체화함

### ○ 안 제3조(책무)

-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관리부서의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규정함. 이는 청원경찰 처우문제에 대한 임용·관리주체의 의무를 일반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 안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원경찰 복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 복무·인사의 경우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나, 제정 목적이 청원 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며, 관리부서의 재량권을 박탈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조례의 제정목적에 반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됨.

###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청원경찰 근무여건 및 위험요소 등의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근무환경,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역시 직장 내 복지의 본질적 요소로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교육훈련)

-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목적 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공백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임

○ 안 제8조(휴가)

- 현재 청원경찰의 휴가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는 퇴직 준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퇴직 이후 사회 적응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한 퇴직 전 휴가 제도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청원경찰의 업무 특성 상 당사자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원경찰이 아닌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청원경찰의 상이한 처우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제정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분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 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청원경찰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5. 20.>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원경찰 50명
- 도비소요액 : 4.5백만원
- 사업량 : 1인 50만원
- 사업내용 : 퇴직준비교육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평생교육원, 사설교육기관 등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비

### 3. 관련조문

- 안 제7조(교육훈련)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2023년 공무원 교육훈련비(자율과정) 지원 기준
- 추계기간 : 향후 5년(2023년~2027년)

#### 나. 추계 결과

- 산출금액
  - (세입) 0백만원
  - (세출) 4백만원
- 산출과정
  - (' 24) 3명 퇴직, (' 25) 2명 퇴직, (' 26) 2명 퇴직, (' 27) 2명 퇴직
  - \* ('23) 기본계획 수립 뒤 차년도부터 추진 검토 필요

- 퇴직자 수 x 50만원

○ 재원조달 방법 : 도비 100%

#### 다. 추계사유

○ 퇴직예정자 발생에 따른 교육훈련비 계상

### 5.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4.5	0	1.5	1	1	1
교육훈련비	4.5	0	1.5	1	1	1